물류업무 계약서

㈜원익 IPS (이하 "갑" 이라 한다)와 ㈜천안 물류(이하 "을" 이라 한다)는 자재 등의 보관 및 입출고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물류업무 계약(이하 "본 계약")을 체결한다.

- 다 음-

제 1 조 (목 적)

본 계약은 "갑"이 "을"에게 본 계약 3 조의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"갑"과 "을"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계약기간/계약요율)

- (1) 본 계약은 2016 년 11 월 25 일부터 2016 년 12 월 24 일 까지 1 개월로 한다. 단, "갑" 또는 "을"이 위 계약기간 종료일 15 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 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.
- (2) 계약 요율
 - 1) 보관료: 월 285 만원 보세화물 항온항습창고 보관 기준 전기료 포함(VAT 별도)
 - 2) 입출고료: 보관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3톤이상 중량물은 외부지게차 임대비용 실비청구
 - 3) 운송은 추후 협의

제 3 조 (물류업무의 내용 및 범위)

- (1) "갑"이 위탁하는 화물에 대한 "을"의 창고 내 보관
- (2) "을"의 소재 창고 내에서의 "갑"의 위탁품에 대한 상,하차 업무 및 창고 입,출고 업무
- (3) "갑"과 "을"이 합의하는 기타의 업무
- (4) "을"은 "갑"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에 따른 "갑"의 화물을 "을"의 창고 내 최소 50 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"갑"의 화물만을 전용으로 보관하여야 함

제 4 조 (창고 출입 권한)

- (1) "갑"의 허가 없이 "을"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"갑"의 보관 제품을 볼 수 없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.
- (2) 단, 건물의 안전 상태 검사, 위생, 방범 및 구호 등을 위한 구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"갑"의 대표 또는 "갑"의 권한을 부여 받은 자와 동반하여 출입을 할 수 있다

제 5 조 (물류비용의 정산)

(1) "을"은 제 2 조 2 항의 보관료에 대하여 본 계약 기간 동안 매월 24 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"갑"에게 청구하고 "갑"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의 익월 12 일까지 현금으로 납입한다.





(2) 물류비용은 "을" 의 입금 계좌 중소기업은행 462-000837-04-011 로 지급한다.

제 6 조 (관련 법규, 법령 및 규정의 위반)

- (1) "을"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"갑"의 화물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- (2) "을"의 제 1 항의 책임은 "갑"이 "을"에게 화물을 인도한 시점부터 "갑"의 요청으로 출고시까지 또는 "갑" 또는 "을"이 지정한 운송사의 차량에 상차하는 시점까지 존재한다.

제 7 조 (사고보고 및 보험)

- (1) "을"은 상품에 화재, 변질, 도난 및 기타 사고 발생시 "갑"에게 통보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, 이에 대한 "갑"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.
- (2) "을"은 보관 중인 상품의 변질, 파손, 도난 및 기타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- (3) "을" 은 "갑"의 화물이 다른 위탁인의 화물과 분리되어 관리되도록 책임진다.

제 8 조 (하도급 금지)

"을"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"갑"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하도급 또는 위임 할 수 없다.

제 9 조 (계약상의 지위 양도)

"을"은 "갑"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 10 조 (비밀 유지)

"을"은 "갑'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"갑'의 사전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제삼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 할 수 없다. 만일 이러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"갑"은 언제든 "갑"의 임의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한 비용 및 손해는 "을"이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계약의 해지)

- (1) "갑" 또는 "을"은 상대방의 고의적 또는 과실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에 사전 1개월전에 서면 통보로써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- (2)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"갑" 또는 "을"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서면 통지로써 해지하고 자신이 입은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다.
 - 1)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.
 - 2) 계약서상 각 조의 내용에 중대한 위배사항이 있을 때

- 3)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
- 4)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, 공과의 체납 처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어 계약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- 5) 폐업 또는 전업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
- 6)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당했을 때
- 7) 위탁비 지급이 2회이상 연체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
- 8)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- (3) 본 조(2)항의 사유 이외에 "갑"과 "을"은 쌍방의 합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12 조 (계약의 변경)

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서면으로 계약조건을 수정. 변경 할 수 있다.

제 13 조 (합의 관할)

본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"갑'과 "을"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소송이 필요 할 경우에는 "갑"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다

제 14 조 (기 타)



- (1)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정리하여 본 계약서에 별첨하고 그 외엔 일반적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.
- (2)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16년 11월 25일

'갑"

주 소 : 경기도 평택시 진위산단로 75

"'≙"

주 소 : 충남 천안시 성거읍 석문길 47

상 호 : ㈜원익 IP

대표자 : 변 정 ;

상 호 : 주식회사 천안물류

대표자 : 박 남